

수출입 공고

<목 차>

1.수입승인대상 철강품목 및 제출서류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작 성 자	이름	이득정
	담당부서 (과)	철강세라믹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송현주		연락처	044-203-4691
	과장	강연주		이메일	upgradew@mail. go.kr

2026. 06. 09.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송현주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수입승인대상 철강품목 및 제출서류		
	2.규제조문	수출입 공고 제6조		
	3.위임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6.15~2026.07.0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글로벌 공급과잉, 불공정 수입재 범람에 따른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철강재 수입 시 제품품질과 조강국 확인이 가능한 품질검사증명서(MTC)* 첨부 제도화 추진 * MTC(Mill Test Certificate): 철강제품 조강국, 성능 등 품질사항 명기, 출고 시 함께 발행 - 수입신고 정합성 및 우회수출 여부 확인 수단으로, 불공정 철강 수입재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조강국 및 제품 품질을 확인하려는 필요 최소한의 수단		
	7.규제내용	철강재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첨부 제도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수입업자		
	9.규제목표	- 철강 품목 수입 모니터링을 통한 불공정 수입재 감시 확대, 우회수입 대응 강화, 시장 투명성 확보 등 기대 - 국내로 유입되는 철강재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불공정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구체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나, 품질검사증명서 첨부 제도화를 통한 수입신고 정합성 및 우회수출 여부 확인 등이 가능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사회적 · 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해당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수입제한품목) ① 별표3에 계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 (수입제한품목) ① 좌동 ② 좌동 ③ 본 공고 별표 4에 계기된 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제5호 가목의 적용 대상 물품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입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강국 (Melted and poured)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입승인 신청 시 해당 서류를 갖추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여 수입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생략된 증빙 서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강국이 기재된 제품검사증명서 2. 조강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제품검사증명서와 별표5에서 정하는 조강국 증빙서류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철강은 WTO 기본수입관세가 0%로, 수입신고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원산지 등 기초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도 무관세 통관

* Unipass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제품명, HS코드, 원산지, 수량 등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수입신고서를 작성, 통관하게 되는 방식

- **(문제점)** 최근 저가 철강재 유입 증가로 반덤핑 조치 집중 시행중이나, 동 조치 회피를 위해 제3국 등을 경유하는 우회수입 의심 사례 증가

→ 원산지만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스템 상에서는 우회수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부족

- **(필요성)** 수입 철강재의 정확한 정보 확인, 쇳물 조강국 확인 등 우회 수입 적발 수단 확보를 위해 철강재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 추진중

※ 「철강, 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25.3.19, 관계부처 합동) 및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25.11.4,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MTC 제출 제도 도입 발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1) [현행유지안]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없음

- **(내용)** 수입업자는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없으며, FTA 등에 따라 타국의 생산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할 의무
- **(장점)** 수입업자는 기존 수입신고 방식 유지 가능
- **(단점)** '04년 이후 우리나라는 철강 관세가 무세화되어 수입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유인이 없는 상황, 정확한 정보 확인 불가

(2) [규제대안1]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 (내용) 대상이 되는 철강재 수입시 수입업자가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장점) 반덤핑 조치 등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무역구제조치 시행 중으로, 규제대상품목의 우회수출 여부 확인 가능
- (단점) 추가 서류 제출에 따른 행정적 부담 발생

(3) [규제대안2] 품질검사증명서 자율제출

- (내용) 수입 철강재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장점) 수입업자 부담 경감
- (단점) 제출의무가 아닌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정확한 정보수집을 목표로 하는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취지에 맞지 않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논의, 업계 간담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 산업정책실장-연세대 민동준 교수 공동위원장('25.1월~11월),

①경쟁력, ②저탄소, ③통상 3개 분과 운영

- － 품질관리증명서 첨부 제도화를 통해 제품 품질, 조강국을 확인하고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

3. 규제목표

- 품질검사증명서를 통해 수입 철강재 조강국 및 품질기준 확인
→ 불공정 무역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해당 규제는 특정 철강재 수입 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 일반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수입 철강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적정하고 최소한의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비례적 타당성 인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대상 철강제품 수입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로, 경쟁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철강제품의 품질 관리 및 조강국 정보 확인을 위해 적용하는 최소한의 서류 제출 요건으로, 관련 수입업체의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규제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과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작성 비대상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세계 각국(미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도 불공정 수입재 대응, 수입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① (미국) 사전수입신고제도(SIMA)* 운영중, 연방규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재의 중량, 화학 구성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MTC 제출 의무화 및 SIMA 제도 개정을 통한 제품정보 사전 등록

- * SIMA (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제품 정보 온라인 사전 입력 승인 필요 → (개정) 제품의 제강공정(Melted&Poured) 국가 명확화, 대상품목 확대(54품목) 등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규정) 19 §141.89(19편 141.89조)
(a) Invoices for the following classes of merchandise, classifiable under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shall set forth the additional information specified: [75-42, 75-239, 78-53, 83-251, 84-149.]
-- Iron or steel classifiable in Chapter 72 or headings 7301 to 7307, HTSUS (T.D. 53092, 55977) - Statement of the percentages by weight or carbon and any metallic elements contained in the articles, in the form of a mill analysis or mill test certificate.

② (인도) 철강 수입 모니터링 제도(SIMS)를 통해 MTC 제출의무 부과

- * 인도 상무부 대외무역총국(DGFT)의 Notification No.17/2015-2020에 따라 철강재 284개 품목(HS 코드 8자리 기준)에 대해 SIMS를 통한 사전 신고 후 수입

③ (캐나다) 철강 수입 모니터링 제도 운영 중, MTC 제출의무 부과

- * 수출입허가법(EPIA) 5.1(1)조에 따라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 운영 중

EIPA(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수출입허가법) 5.1(1)조
5.1 (1) The Governor in Council may, by order, include any type of steel or any product made of steel on the Export Control List or the Import Control List, or both,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its exportation or importation, if the Governor in Council considers it advisable to do so, having regard to:
(a) the fact that the type of steel or product is traded in world markets in circumstances of surplus supply and depressed prices; and
(b) the fact that a significant proportion of world trade in that type of steel or product is subject to control through the use of non-tariff measures.

④ (멕시코) 철강재 신고 정확도 및 사전 정보 획득을 위한 철강 수입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며 MTC 제출 의무화

DOF(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연방관보): 15/4/2024

2.2.19 For the purposes of the Automatic Import Notice of Steel Products, the following shall be applied: following:

B. The documents referred to in sections II and III of paragraph A above must contain the following:

I. Description of the goods covered by the Certificate(such as dimensions; technical, physical, chemical, metallurgical specifications).

II. Casting number, in the case of **Mill Certificates**.

III. **Country of origin of the steel (country where the steel was produced, melted and cast)**, in question of the mill certificate , or country of origin of the merchandise to be imported, in the case of Quality certificate.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o 타법사례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 제한 가능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8조: 수입승인 신청시 산업부가 정하는 서류제출 요구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 산업부가 정하는 서류로 '수출입승인 신청서', '수입계약서' 등을 규정
- 수출입공고 제6조 및 별표 3: 수입승인 적용 대상인 항공 관련 품목 명시, 수입 요령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여러 차례 거친 결과, 관련 업계는 품질 검사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품질검사증명서는 기업간 거래 과정에서 발급되는 서류이며, 수입 승인 신청 과정에서 첨부시 자동 승인될 예정으로 행정적·절차적 부담이 크지 않은바,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수입승인 신청 과정에서 품질검사증명서 첨부시 자동 승인될 예정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수입승인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서버 관리 비용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작업 중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논의('25.1~10), 업계 간담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 '철강 불공정수입 대응방안'('25.3.19),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25.11.4)을 통해 MTC 첨부 제도화 도입 발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상 수입승인 대상에 '철강관련 품목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MTC 첨부 제도화** 근거 마련(3.17일 시행)

2. 종합결론

- 대안별 장단점 분석,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 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품질관리증명서 첨부를 제도화하는 것이 타 대안에 비해 제도의 취지인 제품 품질 및 조강국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품질검사증명서 자율제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품질검사증명서 자율제출>